

소규모합병 공고

당사는 2017년 2월 23일 쌍용해운(주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— 아 래 —

1. 합병방법 : 당사가 쌍용해운(주)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당사와 쌍용해운(주)의 합병비율은 1:0.1198785 로 함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 : 쌍용해운(주)
 - 나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(저동2가)
4. 합병기일 : 2017년 4월 25일
5. 당사와 쌍용해운(주)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17년 3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나. 기 간 : 2017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명부주주 : 2017년 3월 23일까지 당사 자금팀에 제출 (02-2270-5535)
 - 실질주주 : 2017년 3월 20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쌍용양회공업(주) 대표집행임원 귀하

본인은 쌍용양회공업(주)와 쌍용해운(주)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주주명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

2017년 월 일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17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(저동2가)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
대표집행임원 사장 황동철